

# 고양시 청소년의회 운영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의회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의회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두며, 의회 사무국은 고양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의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청소년 기본법」 및 「고양시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고양시 청소년이 교육, 문화, 안전, 인권 등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시하고,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제4조(기능) 본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고양시 청소년 대표활동 및 정책제안, 정책 모니터링 등
4. 고양시 청소년 관련 조례 제안 및 제정
5.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위)

- ① 고양시 청소년 대표로서의 지위
- ② 고양시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지위

## 제2장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원

제6조(자격) 본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고양시 관내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만12세에서 만18세의 청소년이다.

제7조(구성)

- ① 의원 정수는 31명 이내로 한다.
- ② 의원은 제8조에 따라 선발 또는 선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 제8조(선출방법)

- ①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출한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의 구성을 위해 청소년의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발 면접을 통해 의원으로 선발 할 수 있다.

#### 제9조(의원의 임기)

-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의회가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의원이 사퇴하거나 전체회의에 의해 제명될 경우, 그 즉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0조(의원의 사퇴)

-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직을 사퇴할 수 있다.
  1.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원직 사퇴 권고’의 징계를 받고 사퇴를 결정한 경우
- ② 의원은 제1항에 의거하여 의원직 사퇴를 하고자 할 경우,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원직 사퇴 권고’의 징계로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의 경우,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 제11조(의원의 권리와 의무)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의원은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본 의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의원은 의회를 수호하고, 원만하고 민주적인 의사진행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
3. 의원은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4. 의원은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의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

5. 의원은 합법적 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6. 의원은 사상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되, 상호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7. 의원은 의회의 활동에 불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 사정으로 불참할 시 의장과 사무국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12조(의원의 표창) 의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공로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재단의 추천으로 표창할 수 있다.

### 제3장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장단

제13조(의장단 구성)

-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각각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구성된다.
- ② 의장단 선출 투표의 경우, 모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장단의 권한)

- ① 의장단은 의회를 대표하며, 의장의 경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상정할 수 있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③ 의장단은 그 직무수행이 본 규칙 및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보장받는다.
- ④ 의장단은 의회 사무의 전반에 대해 관여할 수 있다.

제15조(의장단의 의무) 의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갖는다.

1. 의장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을 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기회의 때 회 출석의 의무를 갖는다.
2. 의장단은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들의 말에 경청할 의무를 갖는다.
3. 의장단은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심을 가질 의무를 갖는다.
4. 의장단은 의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의무를 갖는다.

제16조(의장단의 사퇴)

- ① 의장단은 제10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에서 사퇴할 수 있다.
- ② 의장단은 제1항에 의거하여 그 직에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발언을 통해 사퇴이유를 설명하고,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퇴할 수 있다.
- ③ 사퇴한 의장단은 그 직의 보궐선거에 재출마할 수 없다.
- ④ 보궐선거의 경우 제13조 2항에 명시한 선출방식에 의해 진행된다.

#### 제17조(의장단의 탄핵)

- ① 의장단은 제27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와 제15조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탄핵될 수 있으며, 탄핵될 경우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② 의장단의 탄핵은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 동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결정된다.
- ③ 탄핵된 의장단의 경우, 보궐선거에 재출마할 수 없으며, 차기 의회 의장단 선거 또한 출마할 수 없다.

### 제4장 고양시 청소년의회 상임위원회

#### 제1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운영위원회 8명 이내
  - 2. 교육위원회 8명 이내
  - 3. 안전위원회 8명 이내
  - 4. 문화위원회 8명 이내
  - 5. 인권위원회 8명 이내
- 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재적의원 3분의 2의 출석한 전체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제1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겸직할 수 있다.
-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보임될 수 없다.
- ③ 운영위원회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단 중 한 명을 당연직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 제20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단)

-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단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며, 상임위원회 내에서 의장단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③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단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의 의결로 사퇴 및 탄핵이 결정된다.

### 제5장 고양시 청소년의회의 회의

제21조(회의) 의회는 의원의 소집요구와 의장의 소집명령, 사무국의 소집제안이 있을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본회의
2. 전체회의
3. 운영위원회의 회의
4. 상임위원회의 회의

#### 제22조(본회의)

- ① 본회의는 의회의 회의 중 최종 결정권을 갖는 유일한 회의이다.
- ② 본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상임위원회별 정책제안서와 조례안, 의원별 정책제안서와 조례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 ③ 본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단의 전원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대면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출석 사유서를 의장에 제출·허가된 의원의 경우, 비대면 출석을 허용한다.

### 제23조(전체회의)

- ① 전체회의는 의회의 전반적 사무 및 일정을 점검·의결하고, 의장단의 사퇴와 탄핵을 결정하며, 의원의 사퇴와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전체회의는 의장의 소집명령과 사무국의 소집제안이 있을 시 개최할 수 있다.
- ③ 전체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단 전원과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대면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출석 사유서를 의장에 제출·허가된 의원의 경우 비대면 출석 혹은 불출석을 허용한다.

### 제24조(운영위원회의 회의)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사무국과 소속 위원의 소집요구, 의장의 소집명령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의회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심의·의결, 전체회의에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각 의원의 거취와 관련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
- ③ 운영위원회 회의의 개최 일시는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과 사무국 간의 협의로 결정된다.
-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위원 전원의 대면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출석 사유서를 위원장에 제출·허가된 의원의 경우, 비대면 출석을 허용한다.

### 제25조(상임위원회의 회의)

- ①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사무국과 소속 위원의 소집요구, 위원장의 소집명령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 ②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기존 조례안과 정책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 ③ 상임위원회 회의의 개최 일시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사무국 간의 협의로 결정된다.
- ④ 상임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위원 과반수이상의 대면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출석 사유서를 위원장에 제출·허가된 의원의 경우, 비대

면 출석을 허용한다.

## 제6장 의원의 징계

### 제26조(의원의 징계)

- ① 의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전체회의에 의결로 징계될 수 있다.
- ② 의원의 징계는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사무국의 발의로 전체회의에 송부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③ 의원의 징계는 다음 각 호로 처분된다.
  1. 구두 경고
  2. 의원직 사퇴 권고
  3. 의원직 제명
- ④ 의원의 징계안이 전체회의에 송부될 경우, 일주일 이내로 회의를 소집해 의결하여야 한다
- ⑤ 피징계 의원의 경우, 징계안을 심사하는 전체회의에서 의원 신상발언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속기록에 남는다.

### 제27조(구두 경고)

- ① 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할 시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의 구두 경고를 받을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전체회의 2회 불참할 시
  2. 특별한 사유 없이 상임위원회 회의 2회 불참할 시
  3. 특별한 사유 없이 의장,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에서 부과하는 의원 업무를 1회 수행하지 않을 시
  4. 의원의 의정활동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었을 시
  5. 그 밖의 사유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 ② 구두 경고를 받은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서면으로 사과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의

원직 사퇴 권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제28조(의원직 사퇴 권고)

① 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할 시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의 의원직 사퇴 권고를 받을 수 있다.

1. 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전체회의 3회 불참할 시
2. 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상임위원회 회의 3회 불참할 시
3. 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장,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에서 부과하는 의원 업무를 2회 수행하지 않을 시
4. 의원의 활동이 동료의원에게 여러 불쾌감을 주었다고 인정될 시
5. 그 밖의 사유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② 의원직 사퇴 권고의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일주일 이내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며, 사퇴 결정 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원직 유지를 결정할 경우, 전체회의에서 사과문을 발표해야 하며, 이는 속기록에 남는다.

③ 의원직 사퇴 권고의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차기 의회 의원 모집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 제29조(의원직 제명)

① 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다.

1. 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전체회의 4회 이상 불참할 시
2. 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상임위원회 회의 4회 이상 불참할 시
3. 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장,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에서 부과하는 의원 업무를 4회 이상 수행하지 않을 시
4. 의원의 활동이 제11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동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시
5. 그 밖의 사유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② 의원직 제명의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의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며, 전체

회의에서 즉시 퇴장 조치된다.

③ 의원직 제명의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차기 의회 의원 모집 신청이 제한된다.

④ 의회는 제명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의장 명의로 학부모와 학교에 제명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는 사무국과 의장단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7장 고양시 청소년의회 사무국

### 제30조(사무국의 구성)

① 의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1. 의회 담당 청소년 지도사
2. 각 상임위원회의 멘토단
3. 운영위원회의 멘토
4. 고양시 청소년재단 소속 청소년 지도사 중 사무국 국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의사팀장 1인을 국원간의 협의를 통해 각각 선출할 수 있다.

제31조(사무국의 역할) 의회의 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의 각 회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제32조(사무국의 권한과 의무) 의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사무국은 의장단과의 협의를 통해 의회의 전반적인 사무 및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2. 사무국은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 수정의 의무를 갖는다.
3. 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각 회의를 준비할 의무를 갖는다.

### 제33조(의회 멘토단)

① 멘토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멘토의 나이에는 제한이 없으나,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

- ② 멘토단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재 선발이 가능하다.
- ③ 멘토단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④ 멘토단의 사퇴 및 징계는 제10조와 제6장에서 규정하는 의원의 사퇴 및 징계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 부 칙

본 규칙은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다만, 본 규칙이 전체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재송부되어 재심사가 진행된 후 재 상정된다.